#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0 발의연월일: 2020. 12. 18.

발 의 자: 박찬대·장혜영·조승래

윤관석 • 허종식 • 김영배

유동수 · 서삼석 · 이성만

문정복 · 김수흥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 및 과실상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대 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 등).

#### 법률 제 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36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6. 간호 및 간병
-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3항제6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제4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공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
	<u>상공제 사업</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요양급여) ①・② (생 략)	제36조(요양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	3
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간호</u>	6. <u>간호 및 간병</u>
7. · 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3
	항제6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
	우에는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
	<u>급한다.</u>
<u>⑤</u>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의 규정	<u>⑥</u> <u>제5항</u>
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생략)

<신 설>

<신 설>

② (생략)

<신 설>

-----.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현 행과 같음)

- 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 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 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 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 급할 수 있다.
-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 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 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